##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78

발의연월일: 2024. 8. 28.

발 의 자:김영진·박홍배·허 영

윤후덕 • 박성준 • 이학영

황명선 · 염태영 · 조승래

김준혁 · 서삼석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2월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 10억원이상을 체납하여 2023년에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698명, 체납액은 2조 3,575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8.8% 및 46.1%를 차지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관리가필요한 상황임.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10억원 이상 국세의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 법률 제 호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10억원 이상의 국세: 15년
- 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국세: 10년
- 3. 5억원 미만의 국세: 5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	①		
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			
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			
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			
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u>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u>	1. 10억원 이상의 국세: 15년		
<u>2.</u> 제1호 외의 국세: 5년	2.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u>국세: 10년</u>		
	<u>3. 5억원 미만의 국세: 5년</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